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22년 5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 1. 제안이유

2021 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동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A)	수납액 (B)	B/A (%)	지출액 (C)	C/A (%)	차기이월액 (D)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9,364,726	38,877,145	98.76	34,126,088	86.69	4,751,057	12.07

###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B/A (%)	수납액 (C)	C/A (%)	잉여금 (D)=(C)-(A)	미수 납액 (E)=(B)-(C)	E/A (%)
합계	39,364,726	39,204,721	95.57	38,877,145	94.75	-487,581	327,576	0.83
현년도	31,741,852	31,326,903	98.69	31,137,520	98.1	-604,332	189,383	0.6
전기미수금	50,000	304,944	609.89	166,751	333.5	116,751	138,193	276.39
전기이월액	7,572,874	7,572,874	100	7,572,874	100	0	0	0.00

○ 세출결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율 (%)	
			B/A (%)	C/A (%)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9,364,726	34,126,088	86.69	4,400,000	11.18	838,638	2.13

○ 차기이월금 처리상황

(단위:천원)

회계별	구분	계	건설개량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잉여금+불용액)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4,751,056	3,056,931	74,606	1,268,462	351,057

3. 검토결과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기이월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9,364,726	38,877,145	34,126,088	4,751,057	

○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 예산액은 393억 64백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388억 77백만원,
- 세출결산액은 341억 26백만원이고,
- 차기이월액은 47억 51백만원입니다.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9,364,726	39,204,721	<b>38,877,145</b>	327,576	

- 세입결산액은 388억 77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율은 98.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2%이며, 미수납액은 3억 27백만원입니다.

□ 세출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9,364,726	<b>34,126,088</b>	4,400,000	838,638	

- 세출결산액은 341억 26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6.69%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2%이며 불용액은 8억 3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202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총괄

- 수입예산 결산액은 388억 77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70억 65백만원, 자본적수입 242억 39백만원,  
이월재원 75억 73백만원입니다.
- 지출예산 결산액은 341억 26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78억 36백만원, 자본적 지출 187억 22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75억 68백만원입니다.
-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75억 73백만원, 수입 313억 4백만원  
지출 341억 26백만원, 차기이월액 47억 51백만원입니다.

## □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 자산총계는 2,769억 88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4%인 38억 7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9억 38백만원이 감소한 63억 57백만원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로 파악되며,
  - ▶ 비유동자산은 전기대비 48억 8백만원이 증가한 2,706억 31백만원으로 용평/진부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안미지구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의 건설중인 자산의 구축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부채총계는 전기대비 2백만원이 감소한 1백만원이며,
- 자본총계는 2,769억 86백만원으로 전기대비 38억 7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타회계 전입금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 총수익은 73억 3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8.2% 감소한 66억 79백만원으로  
신설급수공사 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일반용 수도사용량  
감소가 주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외수익은 전기대비 1.7% 감소한 6억 23백만원입니다.
- 총비용은 184억 98백만원으로  
매출원가는 전기대비 29억 72백만원이 증가한 173억 29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대비 18백만원이 감소한 11억 69백만원으로
- 111억 9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적 요	금액(천원)	연간조정량(m <sup>3</sup> )	m <sup>3</sup> 당요금(원)
급수수익(상수도요금수입)	5,632,012	4,071,321	1,383.34
총괄원가	27,671,735	4,071,321	6,796.75
톤당 손실			5,413.41
요금현실화율(%)			20.35
요금인상요인(%)			391.33

- 연간조정량은 4,071,321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56억 32백만원으로 톤당 요금은 1,383.34원입니다.
-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276억 72백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6,796.75원으로, 결함액은 220억 40백만원이며 391.41%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연간생산량은 7,103,000톤이며, 연간조정량은 4,071,321톤으로 유수율은 57.3%로 전기 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 총괄원가 산정 결과 당기 중에 적용된 효율로는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검토의견

- 2021년도 급수수익은 56억 32백만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20.35%를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대비(전년 25.26%회수) 4.9% 감소한 수치입니다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66억 95백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33.7%만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대비(전년 44%회수) 10.3% 감소하였습니다.
- 이는 전년보다 급수수익이 5억 39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해 총괄원가는 32억 44백만원 증가, 영업비용은 27억 46백만원 증가하여, 급수수익으로 영업비용을 회수하기에는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어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넓은 면적과 산간 농촌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재에도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 경영면에서 어려운 여건입니다.

-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징수한 비율인 「유수율」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노후관 정비 및 누수율 저감 등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최근4년 유수율 현황〉

구분	연간생산량(톤)	연간조정량(톤)	유수율(%)
2021년	7,103,000	4,071,321	57.3%
2020년	6,939,354	4,187,610	60.3%
2019년	6,475,164	4,105,202	63.4%
2018년	6,253,183	4,201,138	67.18
2017년	5,152,613	3,953,215	73.72

-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